#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46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박덕흠 • 고동진 • 윤한홍

서천호・구자근・김선교

엄태영 • 박성민 • 강승규

정희용 · 김용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

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를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마.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바.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제3호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제3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 나.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	2
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3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나이가</u>	<u>다음</u>
<u>많은 사람에게</u> 보상금을 지급	<u>각 목의 순위에 따라</u>
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	
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	
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u>.</u>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u>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u>&lt;신 설&gt;</u>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

   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마. 「장애인연금법」 제2조
- 바. 「기초연금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
-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제3호의 같은 목에 해당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제3호 각 목의 순위 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 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 나.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

	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
	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